

법 무 부 와 그 소 속 기 관 직 제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년사법정책 및 집행 전반을 관리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밑에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소년범죄예방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5급 2명, 6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피부착자의 범죄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기존 6개 보호관찰소에서 18개 보호관찰소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담당 기관을 확대하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 일치를 위해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관할의 경기도 일부 시·군을 서울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로 변경하며, 보호관찰소 및 지소 중 행정지원과 또는 조사과가 설치되지 않은 기관의 해당 분장사무를 복수의 직제 과장 중에 선택하여 사무를 분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외국 우수인재에 관한 거주·영주 자격 및 국적 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무부 국적과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일부 직렬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7. 00. ~ 7.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범죄예방기획과·보호정책과·치료처우과·보호관찰과·소년보호과·전자감독과 및 범죄예방데이터과를”을 “범죄예방기획과·보호정책과·치료처우과·보호관찰과·소년보호과·전자감독과·범죄예방데이터과 및 소년범죄예방팀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자감독과장 및 범죄예방데이터과장”을 “전자감독과장·범죄예방데이터과장 및 소년범죄예방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사항”을 “사항(제11항제6호에 따른 소년보호관찰 행정 관련 지침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항”을 “사항(제11항제7호에 따른 소년보호관찰 실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항”을 “사항(제11항제8호에 따른 소년보호관찰 관련 사회자원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8호 중 “분류심사·상담조사”를 “분류심사”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소년범죄예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년비행(非行) 예방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소년비행 예방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체계 운영
3. 소년비행 예방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4. 소년비행 예방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지원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5. 소년비행 관련 원인·실태분석, 정책연구개발 및 종합대책의 수립
· 시행
6. 소년보호관찰 행정 관련 지침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7. 소년보호관찰 실시에 관한 사항
8. 소년보호관찰 관련 사회자원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행정 관련 지침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0. 상담조사 등 청소년 비행진단·예방에 관한 사항
11. 일반학교 부적응 학생 등의 대안교육 및 청소년심리상담실의 운영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12.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대한 기관평가 및 지도·감독

제9조제1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우수인재 등에 대한 거주 및 영주를 포함한 사증·체류 관리 및 정책에 관한 사항

제23조제10항 중 “관찰과장”을 “관찰과장 또는 집행과장”으로, “행정지원과장이”를 “행정지원과장·관찰과장 또는 집행과장이”로 한다.

제25조제8항 중 “관찰과장이 분장하고, 행정지원과·집행과를 두지 아니한 지소에서는 행정지원과장·집행과장의 사무를 관찰과장”을 “관찰

과장 또는 집행과장”으로 한다.

별표 2의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란 중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강원도”를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강원도·경기도(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포천시·고양시·파주시·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부천시·김포시)”로 하고, 같은 표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기도(다만, 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포천시·고양시·파주시·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부천시·김포시를 제외한 경기도) 별표 3의 서울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란 중 “사항(초동수사 등 긴급성을 요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을 “사항”으로, 같은 란 중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의정부보호관찰소와 그 지소, 춘천보호관찰소와 그 지소의 관할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한다”를 “서울북부보호관찰소를 관할한다”로 하며, 같은 표 서울남부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구로구·금천구
※ 다만,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제4호의2에 의한 피부착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는 서울서부보호관찰소를 관할한다.

별표 3의 의정부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포천시, 강원도 철원군

※ 다만,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제4호의2에 의한
 피부착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는 지소를 관할한다.

별표 3의 인천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부평구·옹진군

※ 다만,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제4호의2에 의한
 피부착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는 지소를 관할한다.

별표 3의 수원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란 중 “사항(초동수사 등 긴급성을
 요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수원보호관찰소의 지소, 인천보호
 관찰소와 그 지소의 관할구역을 관할한다”를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보
 호관찰소성남지소, 수원보호관찰소여주지소, 수원보호관찰소평택지소를
 관할한다”로 하고, 같은 표 대전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란 중 “다만, 전자
 감독과장의 분장사무 중”을 “다만,”으로, 같은 란 중 “사항(초동수사 등
 긴급성을 요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대전보호관찰소의 지소,
 청주보호관찰소와 그 지소의 관할구역을 관할한다”를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보호관찰소공주지소, 대전보호관찰소논산지소를 관할한다”로 하고,
 같은 표 청주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청주시·진천군·보은군·괴산군·증평군

※ 다만,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제4호의2에 의한
 피부착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는 지소를 관할한다.

별표 3의 대구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란 중 “다만, 전자감독과장의 분장

사무 중”을 “다만,”으로, 같은 란 중 “사항(초동수사 등 긴급성을 요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대구보호관찰소의 지소의 관할구역을 관할한다”를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보호관찰소경주지소, 대구보호관찰소포항지소, 대구보호관찰소영덕지소를 관할한다”로 하며, 같은 표 부산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란 중 “다만, 전자감독과장의 분장사무 중”을 “다만,”으로, 같은 란 중 “사항(초동수사 등 긴급성을 요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부산보호관찰소의 지소, 울산보호관찰소 및 창원보호관찰소와 그 지소의 관할구역을 관할한다”를 “사항에 대해서는 지소를 관할한다”로 하며, 같은 표 창원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창원시 · 김해시 · 의령군 · 함안군

※ 다만,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제4호의2에 의한
피부착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는 지소를 관할한다.

별표 3의 광주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란 중 “다만, 전자감독과장의 분장사무 중”을 “다만,”으로, 같은 란 중 “사항(초동수사 등 긴급성을 요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광주보호관찰소의 지소, 전주보호관찰소와 그 지소, 제주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을 관할한다”를 “사항에 대해서는 지소를 관할한다”로 하며, 같은 표 전주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주시 · 김제시 · 완주군 · 임실군 · 진안군 · 무주
군

※ 다만,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제4호의2에 의한
피부착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는 지소를 관할한다.

별표 3의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안산시 · 광명시 · 시흥시

※ 다만,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제4호의2에 의한
피부착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는 수원보호관찰소안양지소를 관할한다.

별표 3의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주시 · 횡성군

※ 다만,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제4호의2에 의한
피부착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는 춘천보호관찰소, 춘천보호관찰소강릉지소,
춘천보호관찰소속초지소, 춘천보호관찰소영월
지소를 관할한다.

별표 3의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천안시 · 아산시

※ 다만,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제4호의2에 의한
피부착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는 대전보호관찰소홍성지소, 대전보호관찰소
서산지소를 관할한다.

별표 3의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 달서구 · 달성군, 성주군 · 고령
군

※ 다만,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제4호의2에 의한

피부착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보호관찰소안동지소, 대구보호관찰소 구미지소, 대구보호관찰소상주지소를 관할한다.

별표 5 전산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 1 다음에 “방송통신주사보 1”을 신설하고, “방송통신서기보 1”를 삭제한다.

별표 5의2 중 보호사무관 “12”를 “14”로 하고, 보호주사 “10”을 “11”로 하며, 보호주사보 “12”를 “9”로 하고, 전산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 1 다음에 “방송통신주사보 1”를 신설하며, “방송통신서기보 1”를 삭제한다.

별표 6 “방송통신주사보 1”을 삭제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교도 2 다음에 “방송통신서기보 1”를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소년범죄예방팀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소년범죄예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소년범죄예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범죄예방기획과장이,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은

보호관찰과장이,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소년보호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5명(보호사무관 2명, 보호주사3명)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보호주사 2명, 보호주사보 3명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① (생략)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범죄예방정책국에 <u>범죄예방기획과 · 보호정책과 · 치료처우과 · 보호관찰과 · 소년보호과 · 전자감독과 및 범죄예방데이터과</u> 를 둔다.	② ----- <u>범죄예방기획과 · 보호정책과 · 치료처우과 · 보호관찰과 · 소년보호과 · 전자감독과 · 범죄예방데이터과</u> 및 <u>소년범죄예방팀</u> 을 ----- -----.
③범죄예방기획과장 및 치료처우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호정책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호관찰과장 및 소년보호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u>전자감독과장 및 범죄예방데이터과장</u> 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 ----- ----- ----- <u>전자감독과장 · 범죄예방데이터과장 및 소년범죄예방팀장</u> ----- -----.
④범죄예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 10. 삭제	
11. <u>소년비행(非行) 예방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u>	11. <삭제>
12. <u>소년비행 예방에 관한 중앙</u>	12. <삭제>

<u>행정기관 간의 협조체계 운영</u> 13. <u>소년비행 예방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 연구</u> 14. <u>소년비행 예방 관련 민간단 체의 활동지원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u> 15. <u>소년비행 관련 원인·실태 분석, 정책연구개발 및 종합대 책의 수립·시행</u> 16. (생 략) ⑤·⑥ (생 략) ⑦ 보호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보호관찰 행정 관련 지침의 제정·개정에 관한 <u>사항</u> 3. 보호관찰 실시에 관한 <u>사항</u> 4. 보호관찰 관련 사회자원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u>사항</u>	13. <삭 제> 14. <삭 제> 15. <삭 제> 16.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⑦ ----- -----. 1. (현행과 같음) 2. ----- ----- <u>사항(제11 항제6호에 따른 소년보호관찰 행정 관련 지침의 제정·개정 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u> 3. ----- <u>사항(제 11항제7호에 따른 소년보호관 찰 실시에 관한 사항은 제외 한다)</u> 4. ----- ----- <u>사항(제11</u>
---	---

5. ~ 20. (생략) ⑧ 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8. 보호소년등의 <u>분류심사·상담조사</u> 등 청소년 비행진단·예방에 관한 사항 9. 일반학교 부적응 학생 등의 <u>대안교육 및 청소년심리상담실의 운영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u> 10. ~ 13. (생략) ⑨·⑩ (생략) <u><신설></u>	<u>항제8호에 따른 소년보호관찰 관련 사회자원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u> 5. ~ 20. (현행과 같음) ⑧ ----- -----. 1. ~ 7. (현행과 같음) 8. ----- <u>분류심사</u> ----- ----- ----- 9. <u><삭제></u> 10. ~ 13. (현행과 같음) ⑨·⑩ (현행과 같음) ⑪ <u>소년범죄예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소년비행(非行) 예방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u> 2. <u>소년비행 예방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체계 운영</u> 3. <u>소년비행 예방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u> 4. <u>소년비행 예방 관련 민간단</u>
---	--

제9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① ~ ⑪ (생략)
 ⑫ 국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체의 활동지원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5. 소년비행 관련 원인·실태분석, 정책연구개발 및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6. 소년보호관찰 행정 관련 지침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7. 소년보호관찰 실시에 관한 사항
 8. 소년보호관찰 관련 사회자원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행정 관련 지침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0. 상담조사 등 청소년 비행진단·예방에 관한 사항
 11. 일반학교 부적응 학생 등의 대안교육 및 청소년심리상담실의 운영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12.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대한 기관평가 및 지도·감독
 제9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
 -----.

1. ~ 9. (생략) <u><신설></u> 10. (생략) ⑬ ~ ⑯ (생략) 제23조(보호관찰소) ① ~ ⑨ (생략) ⑩ 행정지원과를 두지 아니한 보호관찰소에서는 행정지원과장의 사무를 <u>관찰과장</u>이 분장하고, 행정지원과를 두고 조사과를 두지 아니한 보호관찰소에서는 조사과장의 사무를 <u>행정지원과장</u>이 분장한다. 제25조(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① ~ ⑦ (생략) ⑧ 행정지원과를 두지 아니한 지소에서는 행정지원과장의 사무를 <u>관찰과장</u>이 분장하고, 행정지원과·집행과를 두지 아니한 지소에서는 <u>행정지원과장·집행과장의 사무를 관찰과장이</u> 분장한다.	1. ~ 9. (현행과 같음) 10. <u>우수인재 등에 대한 거주 및 영주를 포함한 사증·체류 관리 및 정책에 관한 사항</u>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⑬ ~ ⑯ (현행과 같음) 제23조(보호관찰소)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 ----- ----- <u>관찰과장 또는 집행과장</u>----- ----- ----- <u>행정지원과장·관찰과장 또는 집행과장</u> <u>의</u> -----. 제25조(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 <u>관찰과장 또는 집행과장</u>--- ----- ----- ----- -----.
--	--

신 · 구 정원 대비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방송통신주사보</u>	<u><신 설></u>	<u>1</u>	+1
•	•	•	
•	•	•	
<u>방송통신서기보</u>	<u>1</u>	<u><삭 제></u>	-1
•	•	•	
•	•	•	

[별표 5의2]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보호사무관	<u>12</u>	<u>14</u>	+2
•	•	•	
•	•	•	
보호주사	<u>10</u>	<u>11</u>	+1
•	•	•	
•	•	•	
보호주사보	<u>12</u>	<u>9</u>	-3
•	•	•	
•	•	•	
<u>방송통신주사보</u>	<u><신 설></u>	<u>1</u>	+1
•	•	•	
•	•	•	
<u>방송통신서기보</u>	<u>1</u>	<u><삭 제></u>	-1
•	•	•	
•	•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법무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1
•	•	•	
<u>방송통신주사보</u>	<u>1</u>	<u><삭 제></u>	
•	•	•	+1
•	•	•	
<u>방송통신서기보</u>	<u><신 설></u>	<u>1</u>	
•	•	•	
•	•	•	

신·구정원대비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방송통신주사보</u>	<u><신 설></u>	<u>1</u>	+1
·	·	·	
·	·	·	
<u>방송통신서기보</u>	<u>1</u>	<u><삭 제></u>	-1
·	·	·	
·	·	·	

[별표 5의2]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보호사무관	<u>12</u>	<u>14</u>	+2
•	•	•	
•	•	•	
보호주사	<u>10</u>	<u>11</u>	+1
•	•	•	
•	•	•	
보호주사보	<u>12</u>	<u>9</u>	-3
•	•	•	
•	•	•	
<u>방송통신주사보</u>	<u><신 설></u>	<u>1</u>	+1
•	•	•	
•	•	•	
<u>방송통신서기보</u>	<u>1</u>	<u><삭 제></u>	-1
•	•	•	
•	•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법무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1
•	•	•	
<u>방송통신주사보</u>	<u>1</u>	<u><삭 제></u>	
•	•	•	+1
•	•	•	
<u>방송통신서기보</u>	<u><신 설></u>	<u>1</u>	
•	•	•	
•	•	•	